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 관련 자료

1) 약국에서 당뇨 소모성 재료 판매를 하는 방법

1. EDI 전산을 통한 판매
 - 총금액의 10%만 지불 후 구입
2. 처방전 대로 소비자 가격으로 환자에게 판매하고 차후 공단 지원금부분을 별도 청구
 - 2-1) 약국에서 청구대행
 - 2-2) 환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
 - 총금액을 선 지불 후 공단에 환급신청 해서 90% 환급 받음
3. 처방전 없이 환자가 희망하는 품목과 수량을 소비자가격으로 판매
 - 공단 지원금 전혀 없이 환자가 총금액을 지불

내과, 산부인과등 당뇨병 소모성 처방전 발행이 없는 약국의 경우 - 영업 필요성 X
내과, 산부인과등 당뇨병 소모성 처방전 발행은 있으나, EDI 전산을 사용하지 않는 약국을 공략
*코로나 이후로 모든 의사가 처방이 가능하므로, 환자가 많고 유동인구 많은 곳은 영업 필요

처방이 나오는 병원이 있음에도 EDI를 사용하지 않는 약국은 약사가 귀찮아 하거나,
기존에 당뇨 소모성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당사 직원들도 동일함 - 대부분 잘 몰라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못함)

케어센스, 바로젠, 체크엔 등 대부분의 소모성 재료를 취급하는 업체에서도 담당자들이 약국에서 EDI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소모성 재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음.

따라서 **노코딩을 안 쓰고 타 제품을 쓰며, 약사가 당뇨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 공략이 가능함.

2) 당뇨병 소모성재료 청구를 하지않는 약국의 경우

1. EDI 사용법이 복잡하다고 생각함.
 - 담당자가 소모성 재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고, 어느정도 약사와의 친분이 있다면 설명이 가능함.
한번만 해보면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이며, EDI의 경우에 처방 나오는 당일 입력할 필요가 없음.
당뇨 소모성 재료 청구서 서류와 위임장, 결재 영수증을 스테플러로 찍어서 보관하고,
- **바쁜일과중에 공단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은데 굳이 실시간으로 입력하지 말고, 3~5 장 정도 모였을 때 한번에 청구해도 상관없음.**
2. 마진이 없다고 생각함.
 - 보통 14,500원에 사입해서 20,000원 판매하면 마진(5,500원)에 비해 신경쓸 일이 많다는 생각이 지배적임.

이 경우는 (EDI사용하지 않는 약국에 한해) 당뇨 2형 환자 하루 3회 환자의 처방을 예로 들면 좋음.
당뇨 2형 환자 하루 3회의 경우, 처방 나오는 금액이 225,000원이고,
노코딩 할증 붙는 것과 알콜 스왑 서비스 등을 간단하게 설명해도 단순계산으로 마진이 100,000이상 나옴.

-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 1장 마진 = 이비인후과 처방전10장 조제료**

ex1) A약국에서는 2,000원에 팔고,
B약국에서는 20,000원에 파는데 18,000원은 알아서 받으라고 하거나, 한 달 정도 후 환급받음
C약국에서는 20,000원에 판매한다면

환자들은 어느 약국을 선택 할까요?

ex2) 귀찮아서 당뇨병 소모성 처방전을 주변 타약국으로 보내는 경우

당뇨병 소모성 처방전만 타약국으로 갈까요?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취급조건

1.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신청
 - 필요서류 : 대표약사신분증사본,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3가지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팩스 발송 후 보험급여부 담당자와 처리일정 전화(1577-1000)통화 할 것.
2.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의료기기판매업 추가필수 -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추가 가능함

4)EDI 청구 시 필요서류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서, 처방전, 결제 영수증.(필수)

정부지원금 관련해서는 반드시 추후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위임장(요양비지급청구서에 포함),처방전,10% 현금영수증(환자결제),90% 현금영수증(약국 자진발급), 거래명세표(노코딩 사업내역), 5가지는 약국에서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도 반드시 필요함.

위 서류 첨부 시 edi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별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EDI 사용 시 필요사항

*인사랑 카탈로그 뒤편 참조.

EDI 창을 들어간 후 (새문서) 클릭.

수신자 기본정보

주민번호		연령		SNS동의여부		휴대폰			
성명				청구동의여부		위임동의기간			

처방전, 요양비청구서에 적힌 환자 정보 입력.

위임동의 기간은 처방받은 날짜로 입력

6)당뇨병 소모성재료 상세내역

당뇨구분		인슐린여부		처방발행일		처방지급일수		실지급일수	
상병코드				사용개시일		급여종료일		기준금액	
요양기관		의사면허번호				의사명			

-당뇨구분, 인슐린여부, 상병코드, 요양기관 칸은 주민번호와 성명 입력시 자동으로 입력됨.

-상병코드가 한번씩 안 뜰 경우 E119(2형당뇨)로 입력.

-처방 발행일, 사용 개시일은 처방전 날짜로 동일.

-처방 지급 일수는 대부분 90일인데, 처방전 하단에 총 처방일수가 적혀 있음.

-의사면허 번호는 직접 입력해야 하며, 처방전 하단에 담당의사 면허번호 확인 (숫자5자리)

-면허번호 입력 후 처방전상의 이름과 같은지 확인필요.

구입품목	혈당측정검사지	0		수량		금액	
	채혈침	0		수량		금액	
	인슐린주사기	0		수량		금액	
	인슐린주사바늘	0		수량		금액	

-혈당측정 검사지 옆에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검사지 종류가 뜸. 거기서 NOCODING 찾아서 클릭.

-수량, 금액은 직접 입력해야 하고, 금액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입력.

(란셋, 펜니들도 동일하게 입력하면됨.)

-알콜스왑은 입력 안됨

구입금액		산정기준금		현금승인번호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실본인부담금	

-구입금액, 산정기준금, 본인부담금, 공단 부담금, 실본인 부담금 등 금액 관련된 것은 윗칸에서 입력한 경우 자동으로 입력이 됨.

-현금승인번호에는 현금영수증 승인 번호나 카드 승인 번호를 입력해야 함.

입력 후 처방받은 금액과 같은지 확인필요.

7) 약국에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번호란에 현금결제시 '현금' 입력

카드 결제시 보험공단 전화번호 입력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써야 함)

8)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기본사항

처방일수: 0일 ~ 의사 재량에 따라 최대 180일까지 (보통 90일로 처방이 나옴.)

- 180일 처방 발급하면

당장 환자는 병원 자주 앓기도 되니까 선호 할 것 같기도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 관리가 힘들어서 싫어 할 것 같고,

한번에 많은량을 처방하면 유통기한 문제 및 남은 검사지 별도로 판매하는 문제등 별로 실익은 없을것 같으므로, 그냥 90일로 안내요망.

지원금액(보통 처방전에 명시 되어 있으나 담당자들은 간단한 사항이므로 숙지요망)

1형 환자 : 1일 2,500원 X 처방일

2형 환자: 인슐린투여 횟수를 말함

1회 투여자 900 X 처방일수 (90일 기준 81,000원) 검사지3팩+펜니들1통+란셋1통

2회 투여자 1,800 X 처방일수 (90일 기준 162,000원) 검사지6팩+펜니들2통+란셋2통

3회 투여자 2,500 X 처방일수 (90일 기준 225,000원) 검사지8팩+펜니들3통+란셋3통

소모성 재료 지원 환자의 경우 **90일을 처방 받았으면 90일이 지나기 전에 중복 청구 불가.**

1월1일에 처방받았으면 1일 이후로 90일이 지난 후에야 청구가 가능.

따라서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금액의 MAX로 제품을 주도록 안내필요. (여분이 필요하기 때문)

9) 청구 불가로 뜨는 경우

1. 90일 이전에 처방을 받은 경우.

병원에서 9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처방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처방전이 있더라도 EDI에서는 청구불가로 뜸.

이 경우는 지난 청구서의 날짜 계산 후 다음 처방받는 날짜를 안내해 주고, 약국에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안내.

EX)

1월 1일에 처방받은 사람이 검사지와 펜니들이 모자라서 2월 중순 병원에 가서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을 받음. 처방전은 나오고, 약국에서도 실수로 확인을 안하고 처방전에 나오는 대로 검사지와 펜니들을 기존에 하던대로 10%만 받고 지급함.

기존에 하던대로 EDI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 불가가 뜸.

이 경우에는 지난번에 처방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고, 30~40일 후 90일에 맞춰서 청구하도록 안내 해야함.

또한 환자가 30, 40일 가량 일찍 가져갔기 때문에 다음 처방이나 청구는 날짜를 계산해서 120, 130일 뒤에 처방받고 청구할 수 있도록 약국에 확실히 말해줘야 함.

2. 환자 정보 오류

가장 많이 뜨는 오류고 쉽게 놓치는 오류. 환자 주민번호와 이름, 연락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청구 불가로 뜸.

한번 씩 청구 불가로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제일 먼저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 봐야 함.

3. 보험 불가 환자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환자는 EDI로 청구가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부산 시청에 가서 청구를 해야 함.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환자는 약국 전산에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보험이 안되는 환자는 EDI청구가 불가하다는 걸 인지시켜주면 됨.